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A2003-55

목차

	페이지
1. 법률명	2
2. 시행	2
3. 개정법	2
4. 제7A조, 참고 1	2
5. 제2A부 신설	2
6. 사전	13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A2003-55

1900년 형법의 개정법

호주 수도주 의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1 법률명

본 법령은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다.

2 시행

본 법률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명 및 시행규정은 고시일에 자동으로 시행된다(입법에 관한 법률 제75(1)조 참조).

3 개정법

본 법률은 1900년 형법을 개정한다.

4 제7A조, 참고 1

삽입

- 제49C조(산업살인법—고용주의 위법행위)
- 제49조(산업살인법—고위직 임원의 위법행위)

5 제2A부 신설

삽입

제2A부 산업살인법

49A 제2A부에 대한 정의

본 제2A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차 당사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a)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1차 당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직접 고용한 자(**2차 당사자**)(독립계약자 또는 기타) —

- (i) 1차 당사자가 통제하는 사항 또는
 - (ii) 1차 당사자와 2차 당사자 간 합의와는 별도로 1차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었을 사항 또는
- (b)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1차 당사자의 다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1차 당사자, 다른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한 자(독립계약자 또는 기타)
- (i) 다른 대리인이 통제하는 사항 또는
 - (ii) 대리인들 간 합의와 별도로 다른 대리인이 통제할 수 있었을 사항

사망을 초래한다란, 특정인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행동은 사망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란,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한다.

행동 – 형법전 제13조 참조

사망 – 형법전, 사전 참조

고용인(employer)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고용주(employer)란, 다음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주**를 의미한다.

- (a) 자신이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또는
-

(b) 자신의 대리인이 근로자를 대리인의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정부 – 입법에 관한 법률 제121(6)조 참조

정부기관 – 다음의 경우 기관은 기관의 직무를 위한 **정부 기관**이다.

(a) 기관의 직무행사가 정부(정부의 고위직 임원 포함)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또는

(b) 기관이 달리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인 경우

독립된 계약자 –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임원** – 기업법 제9조 참조

참고 본 조항 시행 시, 회사법 제9조의 **임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법인의 **임원**은 아래의 사람을 의미한다.

(a) 법인의 이사 또는 비서

(b) 아래의 사람

(i) 법인의 사업 전부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자

(ii) 법인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iii) 법인의 이사들이 통상적으로 행동함에 있어 지시나 의사를 따르는 자(자신의 전문적 권한이나 이사들이나 법인과 사업관계에 부여된 직무의 적합한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조언은 제외한다)

- (c) 법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관리인
- (d) 법인의 집행인
- (e) 법인이 작성한 회사정리절차협약서 집행인
- (f) 법인의 청산인
- (g) 법인과 제3자 간 이루어진 타협 또는 정리절차협약서를 집행하는 수탁자나 기타 관련자

외부근로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물품이나 자재를 취급 또는 제조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에 따라 관련자(**본인**)가 고용한 개인을 의미한다.

- (a) 외부근로자의 자택. 또는
- (b) 본인의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는 다른 부지

특정인에게나 특정인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란, 그 특정인을 위해서나 특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용주의 **고위직 임원**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고용주가 정부이거나 정부단체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
 - (i) 정부나 정부단체의 관계장관
 - (ii) 어떻게 기술되든지, 정부나 정부단체의 관련 최고경영자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
-

- (iii) 어떻게 기술되든지, 정부나 정부단체의 직무 전부나 상당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나 정부단체와 관련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
- (b) 고용주가 다른 법인(정부단체가 아닌 법인 포함)인 경우. 법인의 임원
- (c) 고용주가 다른 단체인 경우, 다음의 사람
 - (i) 어떻게 기술되든지, 단체의 직무 전부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단체와 관련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
 - (ii)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단체의 임원이 될 사람

제(a)(ii)항의 사례

1994년 공공부문관리법 제28조(고용) 또는 제30조(임시직무 수행)에 따라 최고경영직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제(a)(iii)항의 사례

1994년 공공부문관리법 제54A조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

참고 예시는 본 법률의 일부이고 포괄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규정이 나타나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입법에 관한 법률 제126조 및 132조 참조).

심각한 피해(*serious harm*) – 형법전 사전 참조

지원자(*volunteer*)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a) 아래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i) 제3자의 거래나 영업을 위하여나 이와 관련된 용역

(ii) 종교, 교육, 자선 및 선행 목적이나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달리 공익과 관련된 단체를 위한 용역

(b)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용역(합리적인
직접경비는 제외한다).

근로자(worker)는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고용인

(b) 독립된 계약자

(c) 외부근로자

(d) 견습생이나 연수생

(e) 자원봉사자

49B 고용주 및 고위직 임원의 부작위

(1) 아래 각각의 경우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의 부작위 행위가
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인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본 장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a) 위험이 고용주의 행동으로 발생한 경우

(b) 위험이 고용주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것에서 발생한 경우

- (c) 위험이 고용주의 약정에서 발생한 경우
- (2) 아래 각각의 경우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의 고위직 임원의 부작위 행위가 고용주의 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인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본 장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a) 위험이 고위직 임원의 행동으로 발생한 경우
 - (b) 위험이 고위직 임원이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것에서 발생한 경우
 - (c) 위험이 고위직 임원의 약정에서 발생한 경우
- (3) 이 제49B조의 경우, 특정인과 제3자 간의 합의 이외에 다른 것이 관련자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그 합의는 무시되어야 하며 그 다른 것은 관련자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9C 산업살인법 – 고용주의 위법행위

다음 각각의 경우 고용주는 위법행위를 범하게 된다.

- (a) 고용주의 근로자가
 - (i) 고용주의 고용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용주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 (ii) 고용주의 고용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용주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이후에 사망하고,
 - (b) 고용주의 행동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하며,
-

(c) 고용주가

- (i) 해당 행위로 근로자나 고용주의 다른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에 야기하는데 있어 부주의하거나,
- (ii) 해당 행위로 근로자나 고용주의 다른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벌칙: 2,000 단위의 벌금형, 20년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한 벌칙.

49D 산업살인법 – 고위직 임원의 위법행위

다음 각각의 경우 고용주의 고위직 임원은 위법행위를 범하게 된다.

(a) 고용주의 근로자가

- (i) 고용주의 고용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용주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 (ii) 고용주의 고용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용주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이후에 사망하고

(b) 고위직 임원의 행동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하며,

(c) 고위직 임원이

- (i) 해당 행위로 근로자나 고용주의 다른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에 야기하는데 있어 부주의하거나,
-

- (ii) 해당 행위로 근로자나 고용주의 다른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벌칙: 2,000 단위의 벌금형, 20년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한 벌칙.

참고 제15조의 일반 살인죄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49E 법원은 법인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1) 법인이 제49C조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범한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 (2) 법원이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기타 벌금 이외에 또는 그 대신에,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a) 다음의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조치를 취한다.
 - (i) 위법행위
 - (ii) 위법행위가 발생한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사망, 심각한 상해 및 기타 결과
 - (iii)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칙이나 내려진 기타 명령
 - (b) 제(a)항에 언급된 사항을 1인 이상의 명시된 사람에게 통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조치를 취한다.
 - (c) 해당 프로젝트가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

위하여 법원이 내린 행동을 이행하거나 법원이 내린 프로젝트를 마련하거나 수행한다.

제(a)항의 사례

TV 또는 일간지를 통한 광고

제(b)항의 사례

연간 보고서에서 통지사항 공개 또는 통지사항을 법인의 주주들에 배포

제(c)항의 사례

지역사회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참고 예시는 본 법률의 일부이고 포괄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규정이 나타나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입법에 관한 법률 제126조 및 132조 참조).

- (3)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동이 이행되어야 하거나 프로젝트가 마련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기간을 특정할 수 있으며, 또한 명령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명령을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다른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4) 하나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명령이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법인의 총비용은 \$5,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포함한다).
 - (5) 법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 가능한 한에서 법원의 재무상태, 명령의 준수가
-

부과할 부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 (6) 법원이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7) 법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내에 제2(a)항이나 제2(b)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신청 시, 법원은 위원장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명령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하며, 아직도 그 이행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b) 법인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
 - (8) 법원이 제7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원장은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을 상대로 법원절차에 대한 모욕죄가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있다.
 - (10)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명령이 내려진 법인이 수도주에 납부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

6 사전

삽입

대리인,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사망을 **초래하다**,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행동,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형법전 제13조 참조.

사망,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형법전 제13조 참조.

고용인,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고용주,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정부,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입법에 관한 법률, 제121(6)조 참조.

정부단체,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독립된 계약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법인의 **임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법인법 제9조 참조.

외부 노동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서비스 제공,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고위직 임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심각한 피해,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형법전 사전 참조.

지원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근로자, 제2A부(산업살인)의 경우, 제49A조 참조.

미주

1 발표

2002년 12월 12일 의회가 발표

2 공표

2003년 12월 4일 입법에 관한 법률에서 공표

3 개정 법률의 공개

개정 법률의 최신의 공개내용은 www.legislation.act.gov.au 참조

본인은 위 법률이 2002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으로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3년 11월 27일 의회가 통과시킨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의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의회 서기
